

#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2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2. 2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2. 26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3. 26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개정이유

-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보완 및 관련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자율결정 등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 ·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안 제1조)

나.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조문정리(안 제4조)

다. 문화재 부속토지의 경감방법 명확화(안 제9조)

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관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삭제(안 제12조)

마. 외국인 투자지원 유치를 위한 감면기간 자율결정(안 제23조)

바.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기간 자율결정(안 제25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의 보완과 관련 법규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 지방자치단체 감면기간 자율결정 등을 2002년도 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외국인 투자지원 유치, 법인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감면기간 결정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3.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